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I. 들어가며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허권 등과 마찬가지로 물권에 준하는 절대권이다. 따라서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로 구성하며, 상표권자는 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 상품과 동일한 상표와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만을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한다면, 이를 모방하여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 현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상표권의 사회 경제적 기능을 보호함에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표법은 등록상표, 상품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표, 상품과 유사한 상표, 상품에 대하여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법은 금지권의 범위를 유사범위까지 확장함과 동시에 침해의 예비적인 행위도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간접침해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표법은 공익적 입장에서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계를 법정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에 대해 살펴본 다음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상표권의 효력

1. 의의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적극적 사용권은 지정상품에 동일상표를 사용함에 그치지만, 금지권 내지 배타권은 유사범위에까지 미치는 점에서 금지권의 범위가 사용권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시간적 범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

(2) 물적 범위

상표권의 물적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그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

현 거래 실정상 타인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자가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물적 보호범위를 어느 범위에까지 미치게 할 것인가가 대두된다.

즉,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만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유사

하여 혼동의 염려가 있는 범위까지 효력범위를 확장할 것인지가 핵심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용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제3자의 사용행위를 제한하는 금지권 내지 배타권은 동일범위를 넘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까지도 효력이 미치게 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정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 더불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할지라도 거래업계에서 출처표시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적은 경우라면 유사상표라 하여 획일적, 형식적인 틀에서 거절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상표의 사용여부, 사용실태, 표지의 크기, 사용의 결과 획득한 주지·저명도 등과 함께 상표에 표시된 각각의 특성과 표지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3) 지역적 범위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에 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권의 성립, 소멸도 또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르게 되며, 상표권은 독립하여 병존하게 된다.

요즈음 상거래 행위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감안하여 이 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요즈음 가장 많은 사례는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복수 국(예 :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일본에서 당해 상표·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제3자(예 :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정당한 상표·상품(“진정상품”이라 함)을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자기의 국내 상표권을 가지고 그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른바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련한 것으로서 골프채, 가방 등과 같이 국내·외 가격차가 큰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첫째, 그 상품이 진정상품이어야 하고 위조 상품이어서는 아니되고, 상품형태의 변경 또는 품질의 변화가 있거나 재포장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병행수입품에 대하여 광고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상표가 부착된 병행수입품의 단순한 수입판매가 아닌 적극적 행위를 포함하므로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출처, 식별기능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속지주의 원칙을 관철하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이론상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만, 침해성립 여부는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① 동일상표가 여러 나라에서 각각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이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자기의 상표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상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② 동일상표가 동일권리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론적 근거로는 상표를 일단 적법하게 사용하여 상표, 상품을 유통하였을 경우에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상표권은 이미 소모되어 버렸으므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소모설’과 상표권은 원래 그 기능보호를 통하여 상표권자의 신용과 경업질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지 상표권자에게 국제적 시장의 자의적 분할 지배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아니므로 진정수입의 병행수입과 같이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상표기능론 또는 공중오인설 등이 있다.

③ 동일 상표권자가 일국에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제3자에게 실시 허락하여 그로 하여금 전용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도 병행수입은 허락된다.

사용자의 권리는 원래 상표권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상표권자의 권리보다 클 수 없고, 그 결과 상표권자가 자기 수입상품을 금지시킬 수 없다면 사용자도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상표권의 효력범위의 확대

상표에 화체된 영업적 가치를 올리기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명성을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것은 순식간에 될 수 있고, 이를 회복하기에는 영업적 가치를 올리기가 그만큼 어렵다.

상표권의 침해 판단은 유사범위까지 확대되나, 실제 유사범위를 판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유사범위를 확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유사범위까지 상표등록을 받아두면 권리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1) 시간적 효력범위 확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면 만료되어 소멸한다. 그러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계속 갱신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시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2) 장소적 효력범위의 확대

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별 국가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마드리드의 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이나 유럽공동체회원국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즉 해외출원과 등록으로 상표권의 효력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3) 내용적 효력범위의 확대

①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을 통하여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함으로써 상표권의 효력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② 저명상표에 대한 희석화 방지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유명한 표장이 되면, 명성과 신용을 얻게 됨에 따라 당해 상표는 고객흡인력과 구매력이 증진된다. 그러나 제3자가 이러한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 당해 상표, 상품은 그 타인의 상품에 흡수되어 점차 희석되는데 이를 “상표의 희석화”라 한다.

상표가 희석화되면, 상표 간의 혼동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으로 상표의 효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판매력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제3자가 당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지하지 말고 즉시 경고 등을 통하여 사용을 제지시켜야 한다.

4.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전용권)

(1) 의의

상표권이 설정 등록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이러한 독점적 사용권(전용권)은 자신이 향유할 수도 있지만 상표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이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다.

(2)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의 구체적 내용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구성요소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본다.

① 등록상표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의미하며,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해 정하여진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전용권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불사용이나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지정상품

“지정상품”이란 상표권자가 출원 시 출원서에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 세목 중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으로 지정한 상품을 의미하며,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지정상품은 1개만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류를 동시에 또는 상품류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그 수에 제한없이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원출원 시 지정상품에 포함하지 못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등록 후에도 지정상품추가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③ 사용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 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자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행위가 상표사용행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행위는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여 그것을 상업적인 거래에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상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란 인쇄, 각인, 날염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장을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포장, 용기, 라벨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접 침해가 되는 수는 있지만 상표로서의 사용은 아니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나 이밖에 전시 등 상품을 유통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상품이 권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통된 후에는 그 후의 전전 유통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없게 된다.

㉢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상표사용의 본래적 모습은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유통만을 상표의 사용이라 하면 상거래 사회에서의 사용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간판, 네온사인, 텔레비전 등의 광고를 사용이라고 보

며, 또한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도 역시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여기에서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한 물리적 의미에서의 부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㉔ 상품자체, 상품의 포장이나 간판 등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경우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광고, 간판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상표를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든지 사용하기만 하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어 자타상품식별표지로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사용이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판례는 '비록 상품의 판매업자가 거래명세표 또는 간판 등에 상표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표시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상호 그자체로서만 사용한 것은 상표사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5.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금지권)

(1) 의의

원래 상표권의 본래적 효력은 당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한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배타적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등록상표의 동일범위를 넘어 '유사범위'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나 이유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 권리"라 한다.

(2) 내용과 범위

상표권자는 타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표법에서는 고의 추정, 손해액의 추정 등과 같은 규정을 두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은 '유사' 개념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에 따라 그 폭이 정해지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획일적으로 정하기 곤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상표법의 목적이나 이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III. 상표권의 효력 제한

1. 의의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에 대해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점력이 발생하고 이를 제3자가 침해하면 침해금지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 사용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① 사용권의 설정으로 인한 제한 ② 공익상 이유로 금지권 행사의 제한 ③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 등과의 저촉관계에서 오는 제한 ④ 또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 중 중요한 부분인 ②와 ③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공익적 견지에서 제한

(1) 의의

상표권의 효력은 ㉠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상품의 포장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취지

상표권의 효력제한 규정을 든 제51조 각호는 상표등록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7조 제1항 제6호·제13호 내용과 관련성이 깊다.

이들 표지는 일반 거래업계에서 누구나가 사용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나, 잘못 상표등록이 된 경우로서 이를 무효심판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무효심판청구 없이 그 금지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범정화한 것이다.

또한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없더라도 본조에 해당하면 금지권을 배제할 수 있고, 등록상표가 후발적으로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 된 경우에도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3)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

㉠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외관상의 구성뿐만 아니라 상품에 사용되는 그 사용방법이 통례에 비추어 품질, 산지 등의 표시로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요한다.

그리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들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경쟁이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

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 보기에 는 부족하고,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영업목적의 유사성,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보통명칭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케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상품의 품질, 산지 등의 표시와 같은 기술적 표장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사용의 필요가 공익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장에 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용하는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자유사용의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상품의 포장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상품의 기술적, 기능적 효과는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타인의 권리와 의 저촉관계

(1) 의의

상표법 제53조에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등과 상표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법적 효력은 먼저 출원하여 등록 받은 권리를 우선으로 하고, 상호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2) 특허권 · 실용신안권과의 저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특허권 등과 저촉의 우려는 없으나, 입체상표의 도입으로 이론상 상호 저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규정을 둔 것이다.

(3) 디자인권과의 저촉

디자인의 물품형태가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특별 현저성을 취득함으로써 상표화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기능적 특징은 상표로 인정 받을 수 없으나, 장식적인 특징은 상표화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실제로 이용 ·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선원인 디자인권이 존재하면 상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4) 저작권과의 저촉

상표의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은 미술저작물과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보호대상이 상표에 포함된 경우 선행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단이 없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법은 상표권의 효력을 보다 확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 범위에 속하는 타인의 사용에 대하여도 이를 상표권의 침해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거래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하여야 하는 표장에 대하여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는 상표법의 목적과 배치될 뿐 아니라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역시 이를 조정할 관련 규정도 요청된다.

그러므로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등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상호 간에 선후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민국법명진중외**

IV. 나가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와 같이 상표권의 본래적 효력은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가 당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범위가 협소하여 침해에 대한 제재



장혜룡
 (현) 유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법무담당관실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조사관(따견)
 제44회 변리사시험합격
 호주 Wollongong 대학 대학원 석사